

# 정보주권의 위기, 바람직한 규제정책의 방향

2015. 10. 27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구태언 변호사



- 1.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과 정보주권 유지를 위한 인터넷 정책방향**
- 2. 핀테크 비즈니스에서 특허의 의미와 가치**

# 1.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과 정보주권 유지를 위한 인터넷 정책방향

## 1-1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



# 국경 없는 온라인 서비스와 사이버 망명

YAHOO! MAIL

Hotmail.



iCloud

Gmail™  
by Google



Microsoft Office  
Outlook

inbox.com

mobile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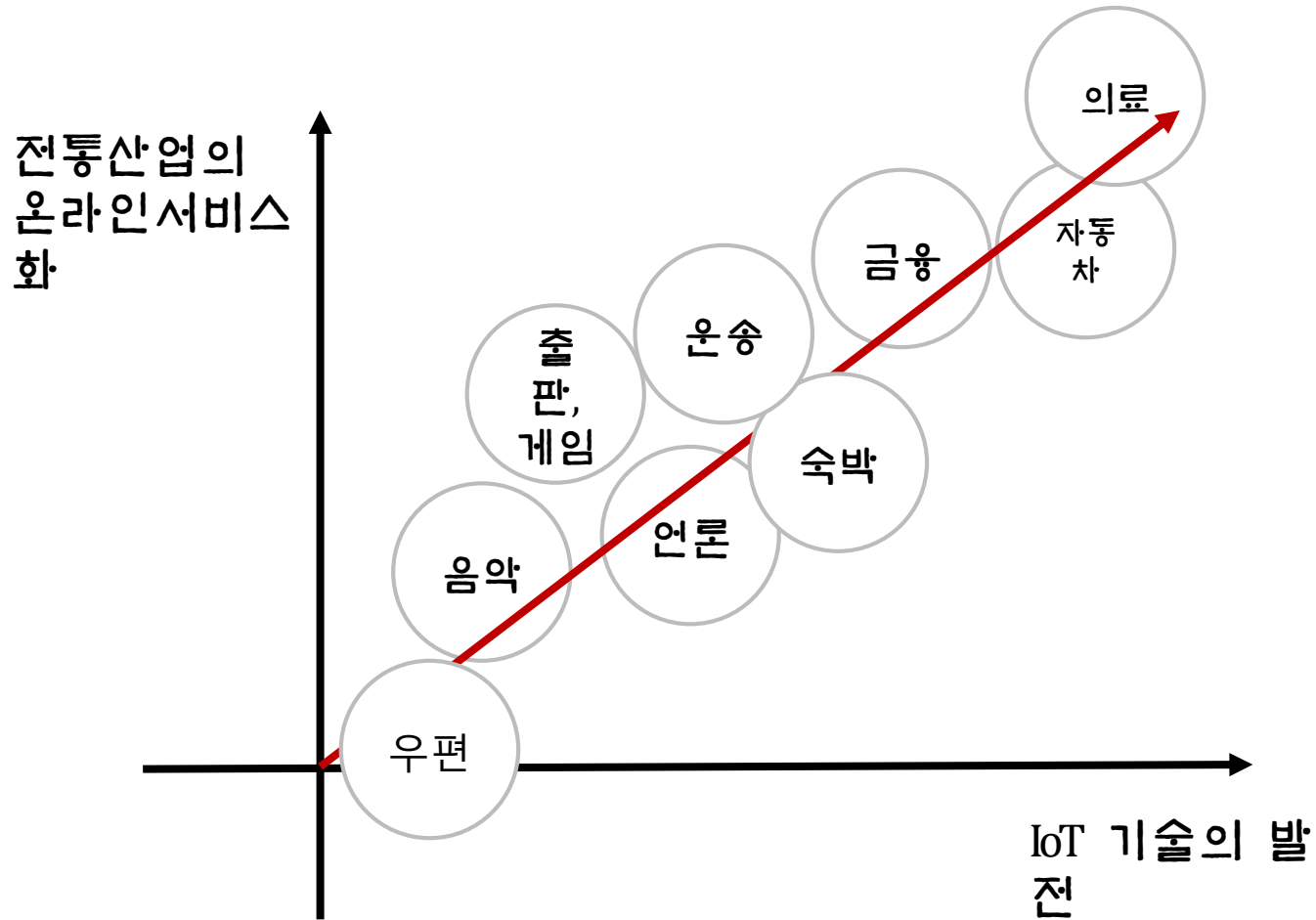


Telegram

ta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

facebook®

# IoT 시대에는 O2O가 급속도로 진행



# 인터넷과 정보 주권

클라우드 서비스 발달로 국내의 정보가 해외로 이전되는 현상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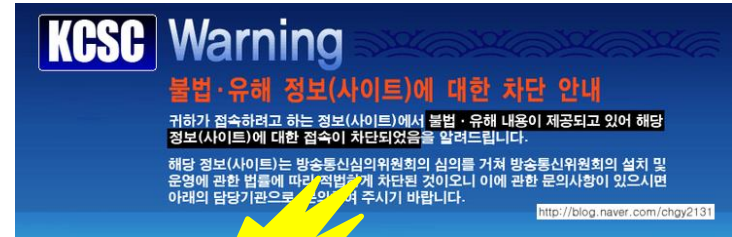




## 1-2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O2O(Online to Offline)의 국경을 넘은 공습

#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규제

- 행정자치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감독
- 개인정보 보호 의무 준수
- 섯다운제 등 청소년 보호의무 준수



# O2O - 국경을 넘은 온라인의 공습

- O2O란?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어테크)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 사업은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현상 발생
  - 우버X
  - 쿠팡 로켓배송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가 규제 중첩 현상도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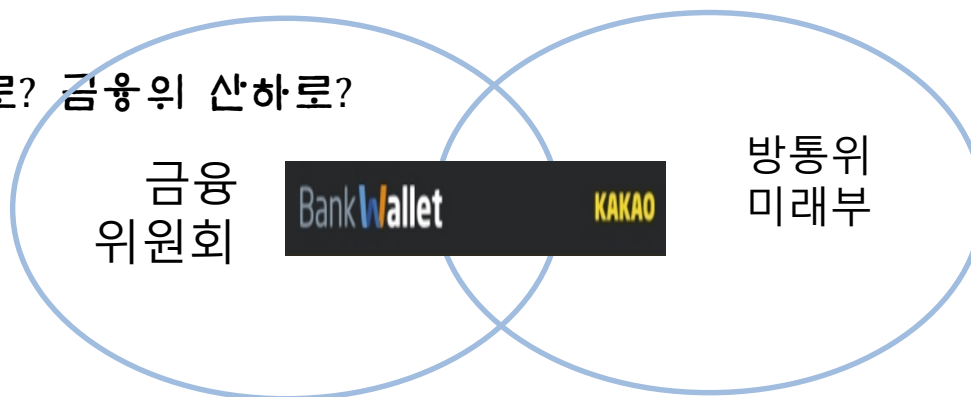
# O2O는 산업별 규제 융합도 초래

## □ 핀테크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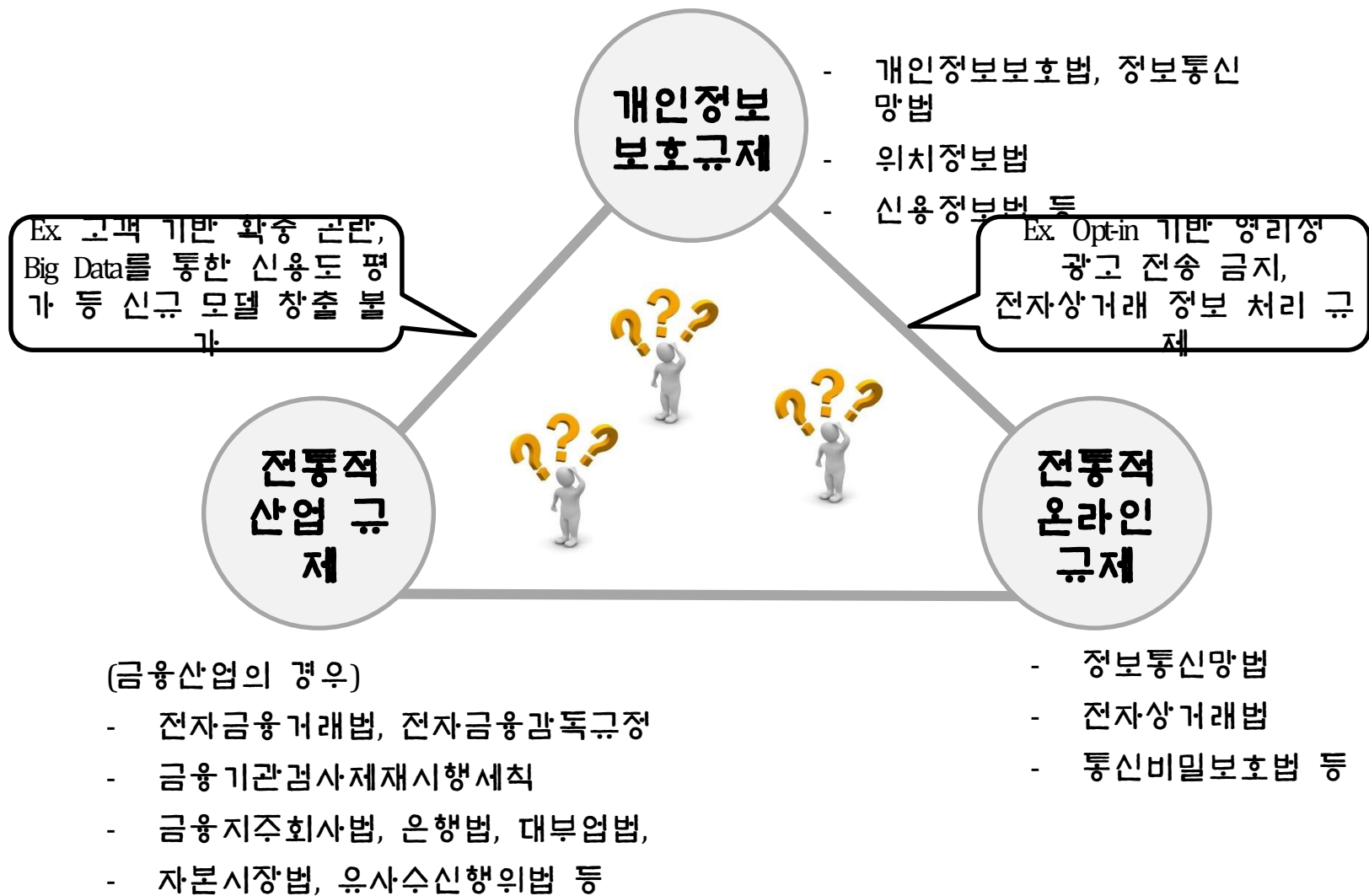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 O2O 산업 - 3중 규제





# 해외의 핀테크 투자

## • 중국의 핀테크

- “중국 핀테크 산업에는 사전 규제란 게 없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규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 덕에 알리페이, 위뱅크(텐센트 인터넷전문은행)를 비롯한 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다” -황타오 상하이교통대 교수
- “알리바바 위어바오는 미국 페이팔을 모델로, 중국 개인 간 대출(P2P) 서비스는 미국 렌딩클럽이나 조파를 모방해 만들었지만 중국의 핀테크 열풍은 미국을 뛰어넘었다”
- “중국 P2P 플랫폼은 수천 개에 달하지만 미국은 아직 100개도 되지 않는다”

• 중국 정부는 사전 규제 방식으로 진입장벽을 치

• 영국은 핀테크 분야에 3억 4200만 파운드(약 5850억

### 세계 4대 머니마켓펀드(MMF)로 떠오른 '위어바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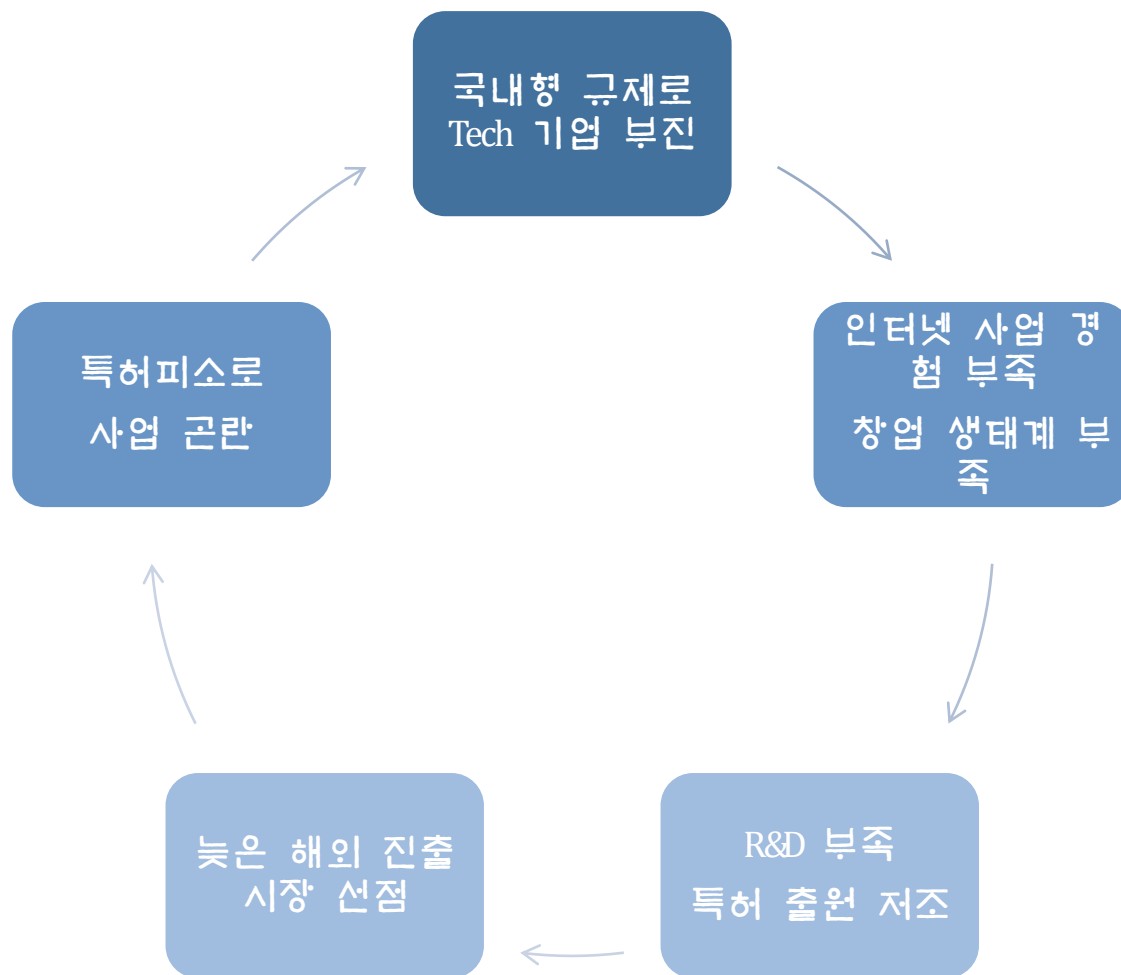
|            |                              |
|------------|------------------------------|
| 출시         | 2013년 6월                     |
| 가입자        | 1억 8500만명                    |
| 펀드 규모      | 5789억3600만위안<br>(101조3500억원) |
| 1인당 평균 투자액 | 3133위안 (54만8000원)            |
| 수익률        | 4~5%                         |

\*지난해 말 기준, 자료=중국 자산운용사 텐홍(天弘)

## 1-3 규제가 왜 한국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막는가



낮은 규제완화 → 인터넷 R&D / 시장 경험 부족 특허 부진 → 해외 진출시 특허 소송



# 선진국 특허장벽 구축 현황 및 우리나라 BM분야 특허 출원 현황

##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Bank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158건
- Visa International Service Association 118건
- Morgan Stanley 103건

##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 특허괴물의 PCT출원으로 국내시장 성숙 후 공격 혹은 해외시장 진출 시 공격 우려

## 미국의 특허방어회사와 특허방어연합 현황

|                                 |      |                                         |
|---------------------------------|------|-----------------------------------------|
| RPX (Rational Patent)           | 회사명  | AST (Allied Security Trust)             |
| 특허방어회사, 특허소송 위험 해소              | 설립목적 | 특허방어연합 - 특허료, 소송비용 절감                   |
| 2008년3월                         | 설립시기 | 2008년8월                                 |
| 회사규모에 따라 5만~50만달러 가량이 낮을수록 높아짐  | 연회비  | 없음, 운영비(50만달러 이하) 부담                    |
| 미국 특허 344개, 미국 특허 사용권 270개 이상 등 | 보유특허 | IT, 인터넷, 반도체,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케이블 TV 분야 특허 |
|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 회합들은 의견 제시할 수 없음   | 특허구입 | 회원들간 합작                                 |
| 삼성, LG, 휴렛패커드, 노키아, IBM         | 가입회원 | 모토로라, 휴렛패커드, 시스코, 구글 등                  |
| 파나소닉, 필립스, 소니 등 14개             |      | 15개, 30~40개로 확대 계획                      |
| 인합                              | 특허소송 | 인합                                      |



출처: 서울경제, “[진화하는 특허괴물 기술한국이 흔들린다] <4>특허펀드로 '기술한국' 지키자”, 2009. 9.

23.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090923171712275>

**1-4 인터넷 정책은 글로벌  
경쟁력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 IoT시대는, 국경을 넘은 글로벌경쟁 시대



-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고 서비스를 하도록 유도해야 –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
- 강한 규제로 국내기반 서비스 소멸은 국가정보공동화 초래 – 전략적 위기 초래
- 정보를 장악한 국가가 미래의 패권 차지



# 금융 규제완화 성공사례 - NFC페이

-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로 진정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 출현
  - 아무런 사전 설치 없이(무설치),
    - 쇼핑앱에서 구매 시작(1단계)
    - 휴대폰 뒷면에 후불교통신용카드 접촉(2단계)
    -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3단계)
    - 구매확인(4단계)
- ※ 금융위원회가 2, 3 단계를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인증’으로 유권해석하여

보안성 심의 통과

NFC 간편결제 과정 (구매및 결제선택→카드리딩→비밀번호)



# 규제완화 실패 사례 - 쿠팡의 로켓배송

-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구매고객을 상대로 무료배송 실시
  - 전국 7개 물류센터 설치, 1,000명 이상 배송기사 고용
  - 유통과 물류의 융합현상
- 국토부는
  - 물건값 9,800원 이상 무료배송은 배송비가 상품가격에 포함되었으면 불법
  - 택배업계가 수사기관에 고발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입장
    - 정부가 정책판단을 하지 못한 채 사법부에 책임 전가로 규제 불명확성 장기화
- 자사 고객 상대 무료 배송 사례
  -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
  - 슈퍼마켓의 무료 배송
  - 배달음식점의 음식 배달
  - 신문사의 신문배달

## 1-5 인터넷 정책 개선방안



#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제4장, 저작권법 제103조의3)
  - 문제점: 현행 법령상 그 구성요건인 ‘개인정보’의 정의가 지나치게 넓고(비식별 개인정보도 개인정보라 정의) 대부분 형벌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전 고지 / 동의를 구현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큰 부담
  - 개선방향: 비식별정보를 개인정보로 정의하는 부분은 좁히는 방향으로 개선
- 개인정보 수집상의 형식적 동의 문제(정보통신망법 제22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문제점: IoT시대에는 개별적 동의창이 무수히 많아져 개인의 동의책임만 남게 될 뿐 실질적 동의권 행사가 어려움. 개인은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국가가 기업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심사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함
  - 개선방향: 구체적 개별적 동의제도 폐지 -> 개인정보보호정책에 포괄적 동의 및 사후통제권부여로 전환. 정부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절한지 심사 후 시정조치
- 개인정보의 제공(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 등)
  - 문제점: 제3자 제공시 제3자를 모두 나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므로 일정한 범주로 categorize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범위를 추가하는 경우에만 변경통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 개인정보의 파기(정보통신망법 제29조)
  - 문제점: 글로벌 기업의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영구보존 하는바,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향: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고려.
-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
  - 문제점: 글로벌 사업자 입장에서 해당 규정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여 매우 부담스러운 부분임.
  - 개선방향: 삭제 또는 EU를 비롯한 외국 사례를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정안을 고려.
- 개인정보 국외이전 관련 역차별(정보통신망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6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 문제점: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을 이용하는 신사업모델의 등장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현재, 국내기업에게만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별도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글로벌기업과의 역차별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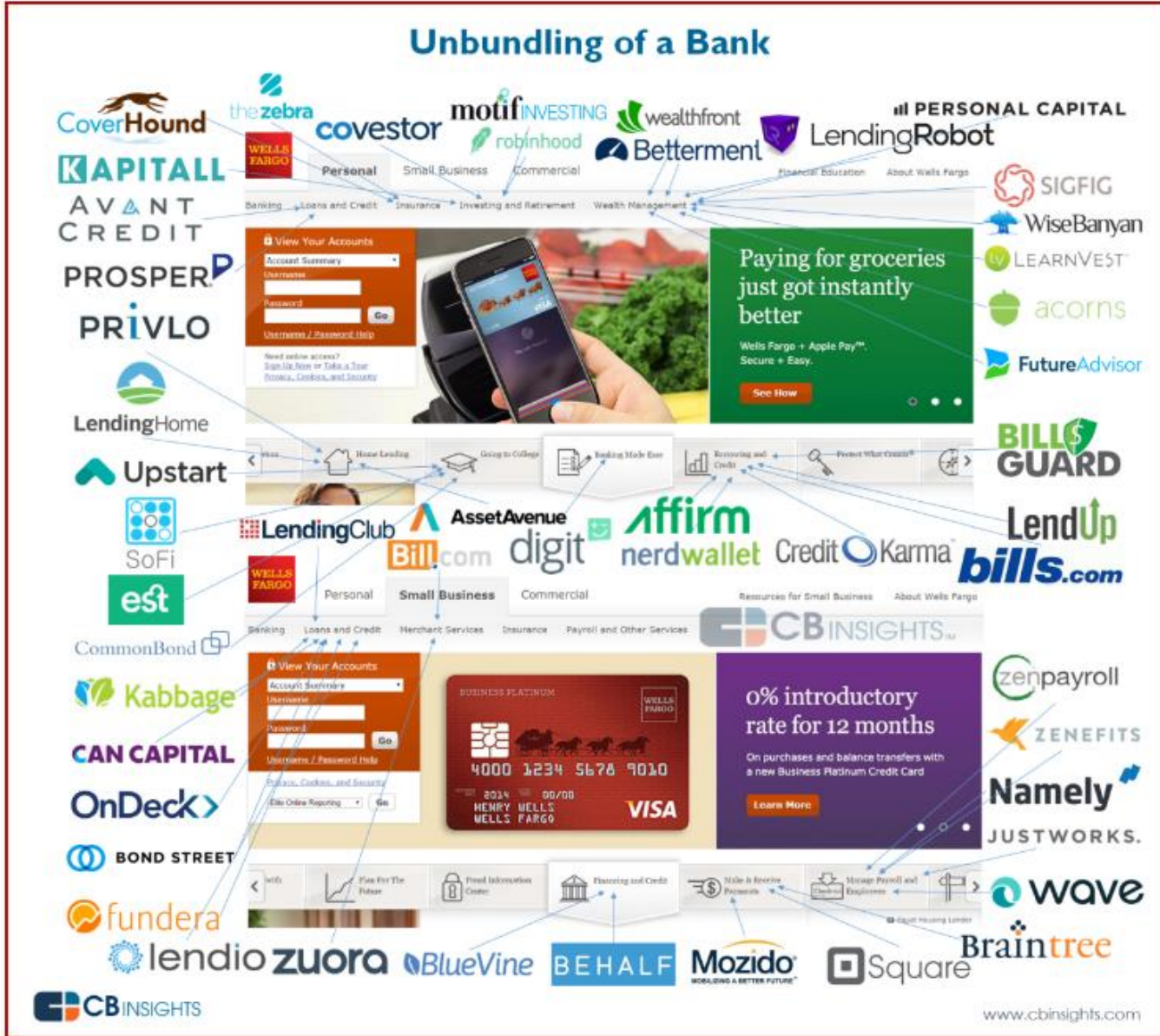
# 인터넷 규제 개선방안

- 위치정보보호의 현실화(위치정보보호법 제2조, 제15조, 제19조)
  - 문제점: 위치정보를 개인정보에서 분리해 별도의 보호체계를 적용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입법례임.
  - 개선방향: 위치정보보호법에서 보호받아야 할 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로 명료화하고 “(1)개인의 위치에 관한 정보로서 (2)그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그 개인을 해당 정보만으로는 알아볼 수 없더라도 위치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기반사업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온라인 본인확인(실명, 연령확인) 문제(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
  - 문제점: 2013년도 3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에서의 본인확인 ‘대체수단’인 휴대전화의 경우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 소의계층에게 온라인상 본인확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 개선방향: 온라인에서의 본인/실명/연령확인 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용자들이 입력하는 정보를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진정한 것으로 믿고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필요

## 2. 핀테크 비즈니스에서 특허의 의미와 가치

## 2-1 O2O 및 핀테크 산업의 발전에 따른 금융 IT 환경의 변화

# Unbundling 현상: 금융업계의 변화





# Unbundling 현상: 금융업계의 변화



## 전자금융거래 방식의 변화





#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2)

## 핀테크 주요 사업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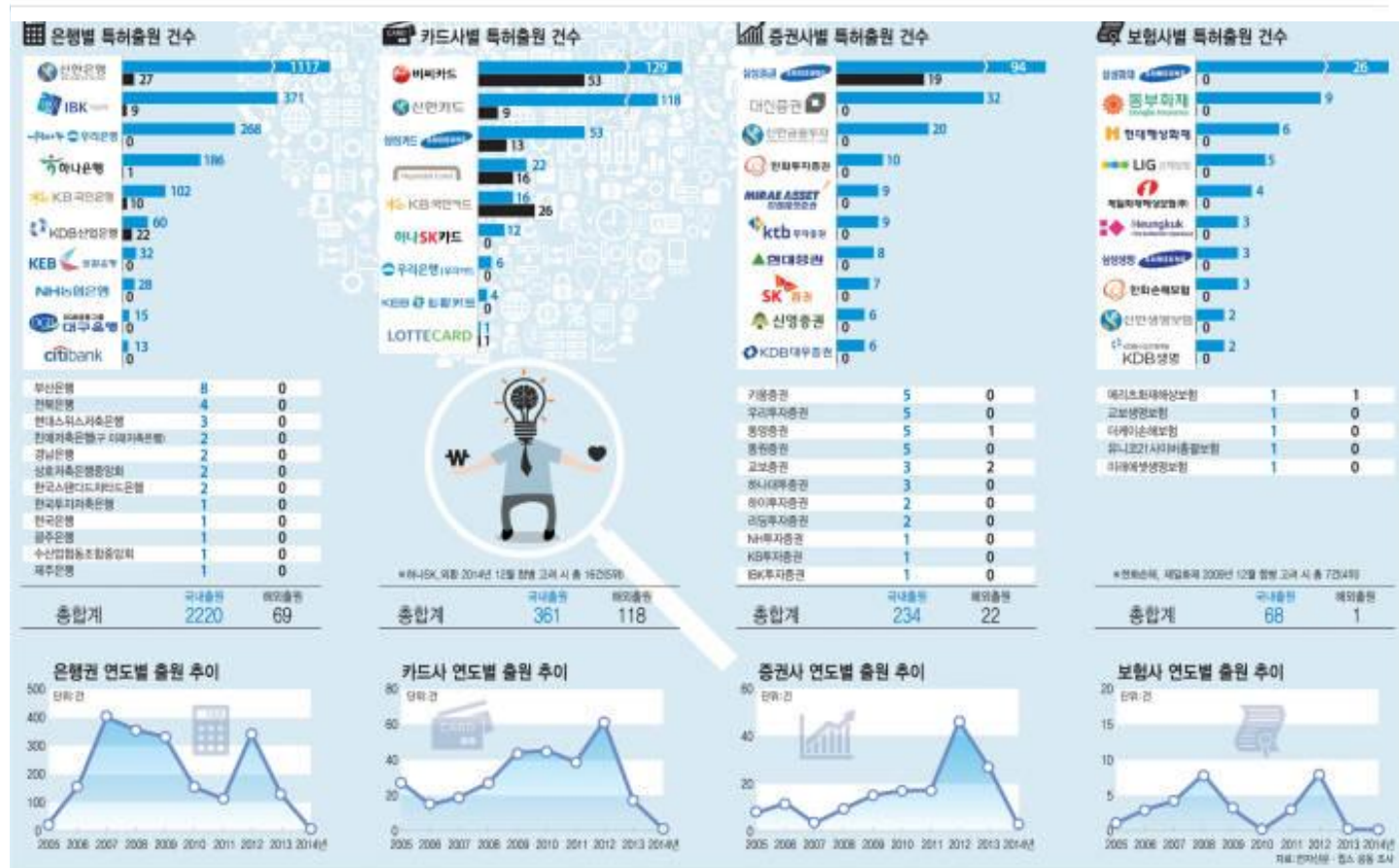
# 최근 핀테크 산업 동향 (3)

##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 · 결제 서비스 혁신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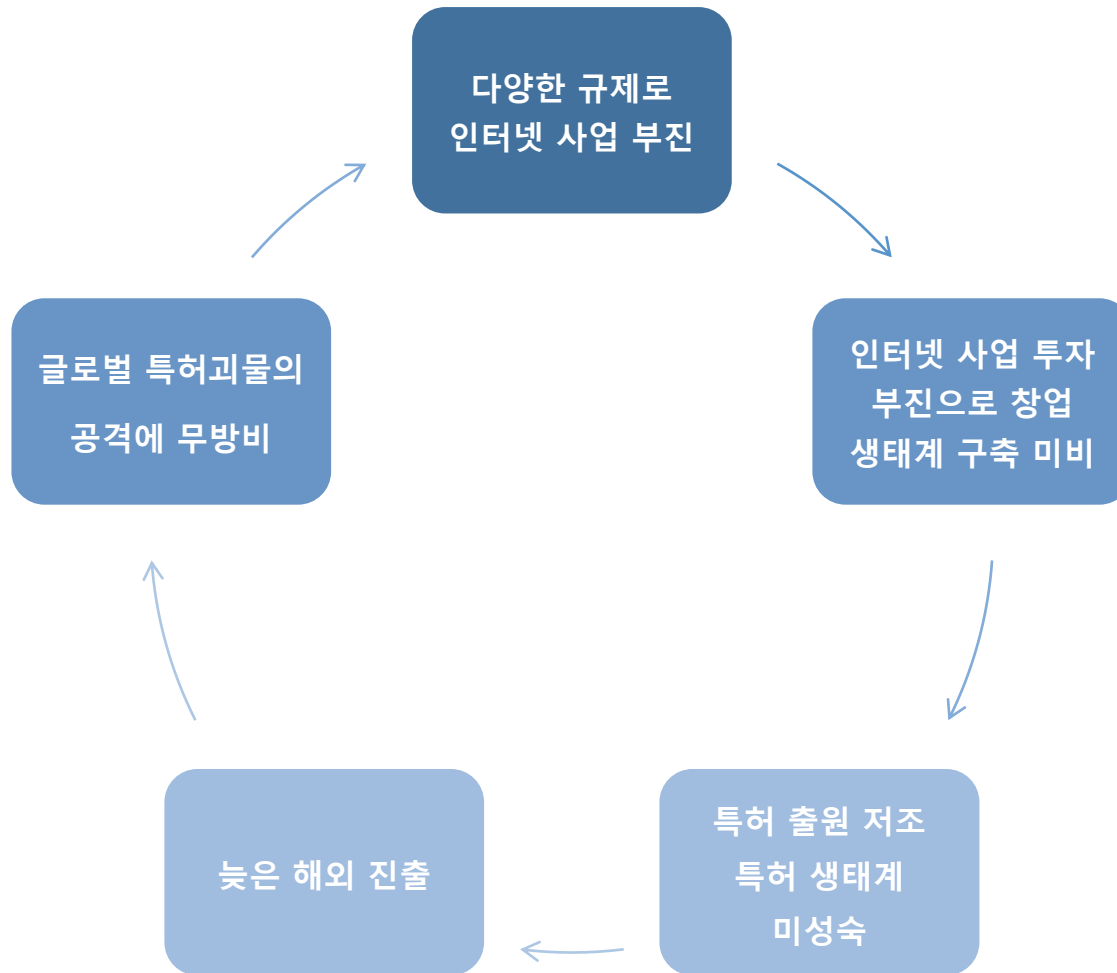
| 업종    | 기업          | 주요 내용                                                                                                                                         |
|-------|-------------|-----------------------------------------------------------------------------------------------------------------------------------------------|
| 플랫폼   | <u>구글</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지급 '<u>구글 월렛</u>'(2011), 이메일 기반 송금 등 출시</li> <li>영국 내 전자화폐 발행 허가, 소액대출업체 '<u>렌딩클럽</u>' 투자</li> </ul> |
|       | <u>애플</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지급 '<u>패스북</u>' 출시 및 아이폰5 이후 모델 기본 탑재</li> <li>NFC 방식 카드결제인 '<u>애플페이</u>' 미국내 서비스 서비스 개시</li> </ul>  |
| SNS   | <u>페이스북</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일랜드 내 전자화폐 발행 승인 및 EU내 효력 발생</li> <li>해외송금 기업인 '<u>아지모</u>' 등과 제휴 추진</li> </ul>                       |
|       | <u>텐센트</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급결제서비스 '<u>테페이</u>', MMF '<u>리차이퉁</u>' 출시</li> <li>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li> </ul>                    |
| 통신서비스 | <u>버라이존</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T&amp;T, T모바일 공동으로 모바일 지급결제 '<u>아이시스</u>' 출시</li> </ul>                                               |
| 검색    | <u>바이두</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전용 MMF '<u>바이파</u>' 출시</li> <li>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li> </ul>                                    |
| 전자상거래 | <u>알리바바</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u>알리페이</u>', MMF '<u>위어바오</u>' 출시</li> <li>중국 정부 민영은행 시범 사업자 선정</li> </ul>                           |
|       | <u>이베이</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 서비스 '<u>페이팔</u>' 출시</li> <li>자사 선불카드인 '<u>my Cach</u>' 출시</li> </ul>                     |
|       | <u>아마존</u>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사 사이트 내 지급결제서비스인 '<u>아마존 페이먼트</u>' 출시</li> </ul>                                                      |

## 2-2 핀테크 특허 주도권 경쟁

## [이슈분석]특허괴물 새 먹잇감 은행·카드·증권·보험...핀테크 금융특허 경쟁력 '낙제'



# 인터넷 R&D와 특허 부진



## <카드사, 전자상거래, 제조사가 대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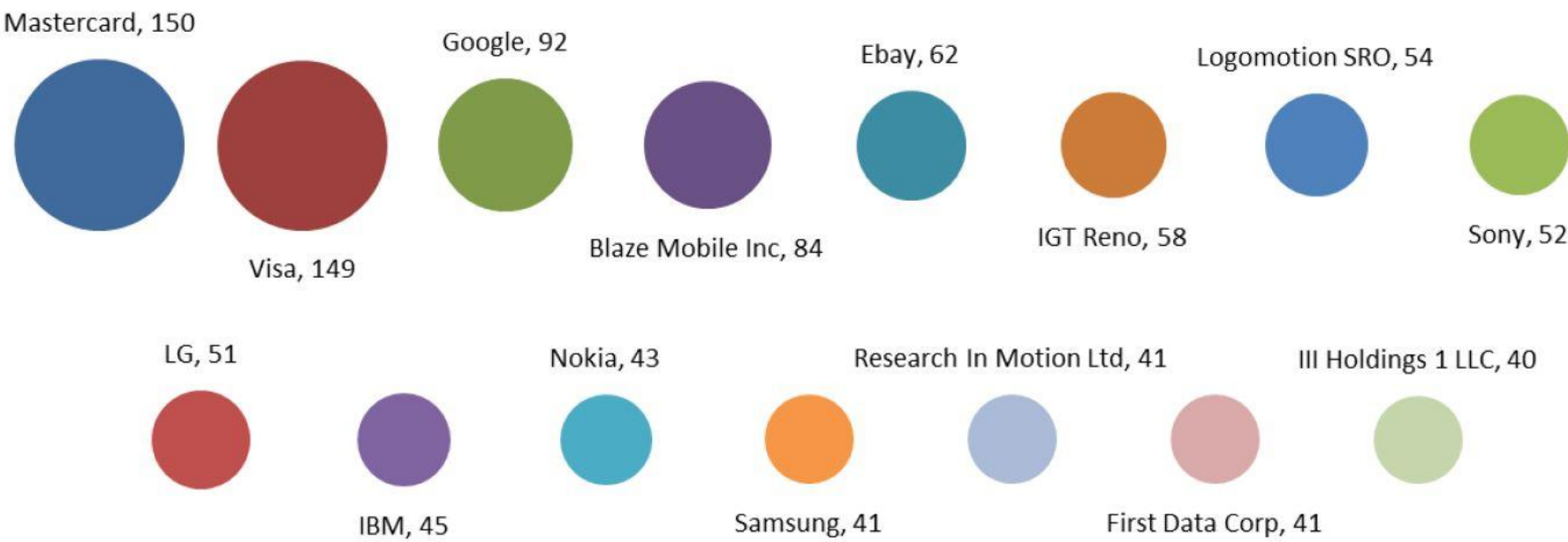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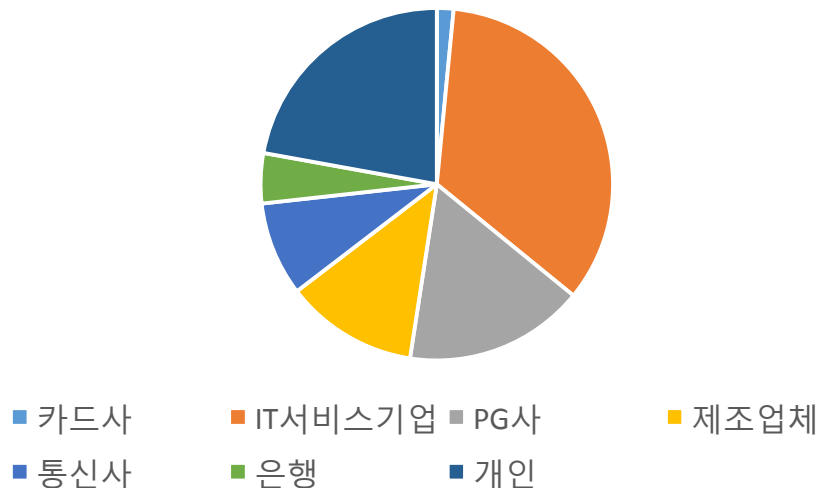


Figure 1: Top Assignees in Cashless Payment space

# 금융업체. 핀테크 IP 주도권 부족

- 금융사의 국내 특허 출원 건수는 은행 2220건, 카드사 361건, 증권사 234건, 보험사 68건
- 이 가운데 핀테크 특허 비중은 집계되지 않고, 모바일 결제 관련 특허 비중은 카드사와 은행 각각 1%와 4% 수준

모바일 결제 특허출원 비중



[모바일 결제 관련 특허 비중]

- 카드사 1%(63건)
- IT서비스기업 33%(1411)
- PG사 16%(680)
- 제조업체 12%(500건)
- 통신사 8%(355건)
- 은행 4%(189건)
- 개인 21%(910건)

- 출처: 특허청 지식재산권 통계, 월별 지식재산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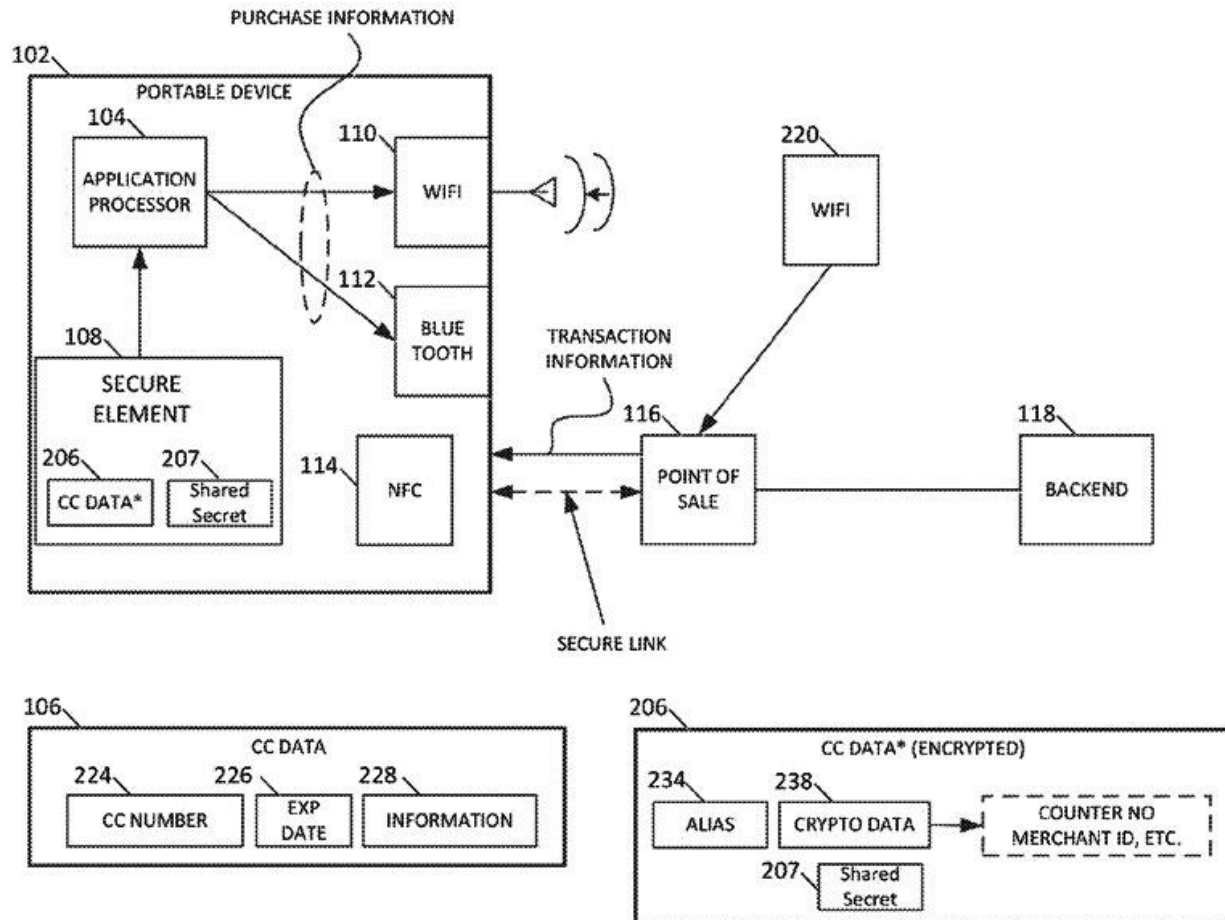
## ◆ 애플, P2P 지급결제 관련 특허 출원

- 아이폰 유저들간에 NFC와 와이파이 또는 블루투스로 송금 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예정
- 유저는 (1) 월렛 앱(Wallet App)을 열고 (2)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를 선택 후 (3) 금액을 입력하고 수신자를 선택 (4) 지문인증 또는 비밀번호 인증 후 전송
- 수신자는 암호화된 지불 결제 패킷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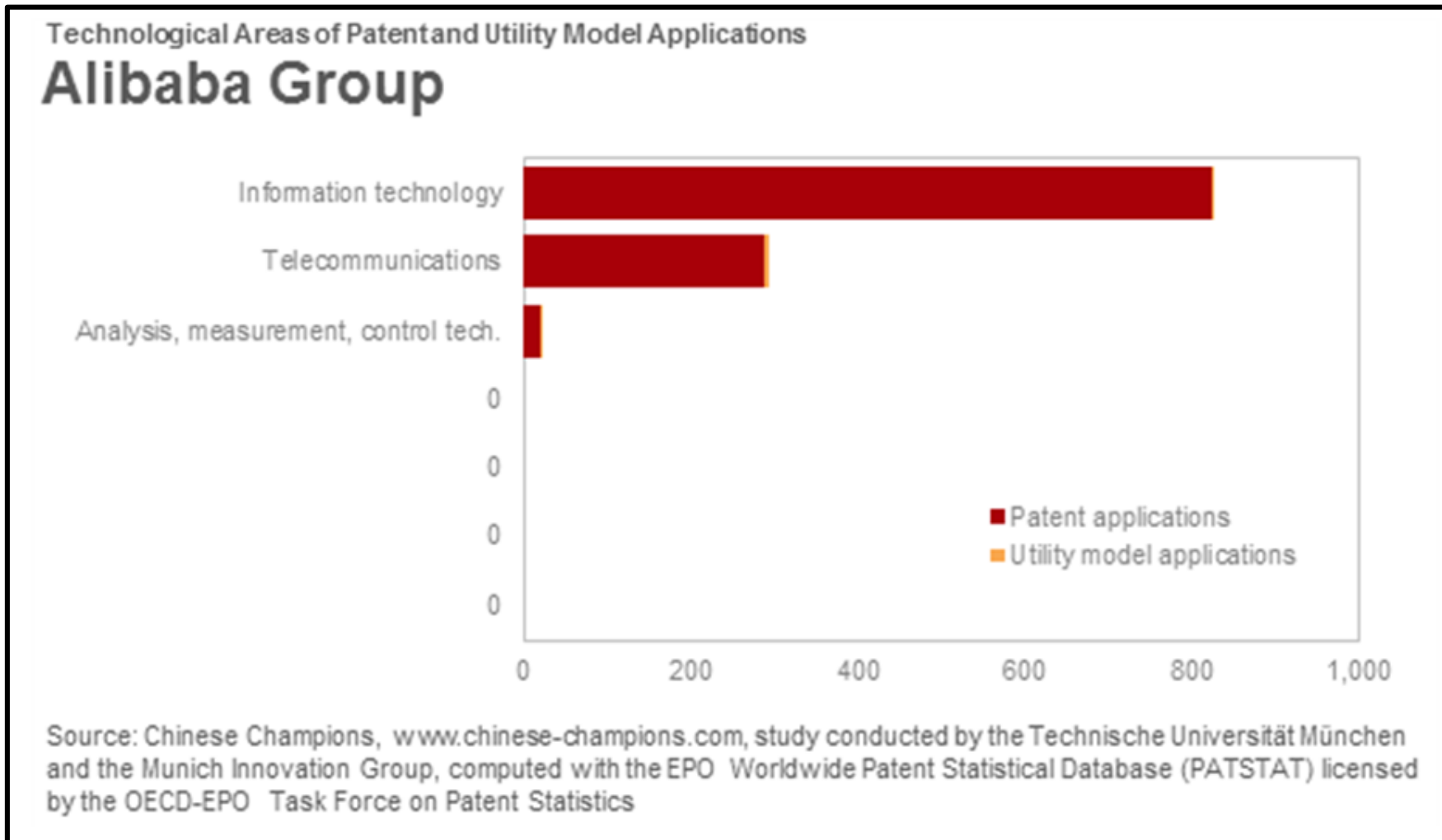
## ◆ 애플은 다양한 분야에서 특허 출원으로 핀테크 진출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

# 애플의 P2P 지급결제 특허 출원 (2)

## <Apple P2P 지급결제 특허 내용>



# 알리바바 특허 출원 현황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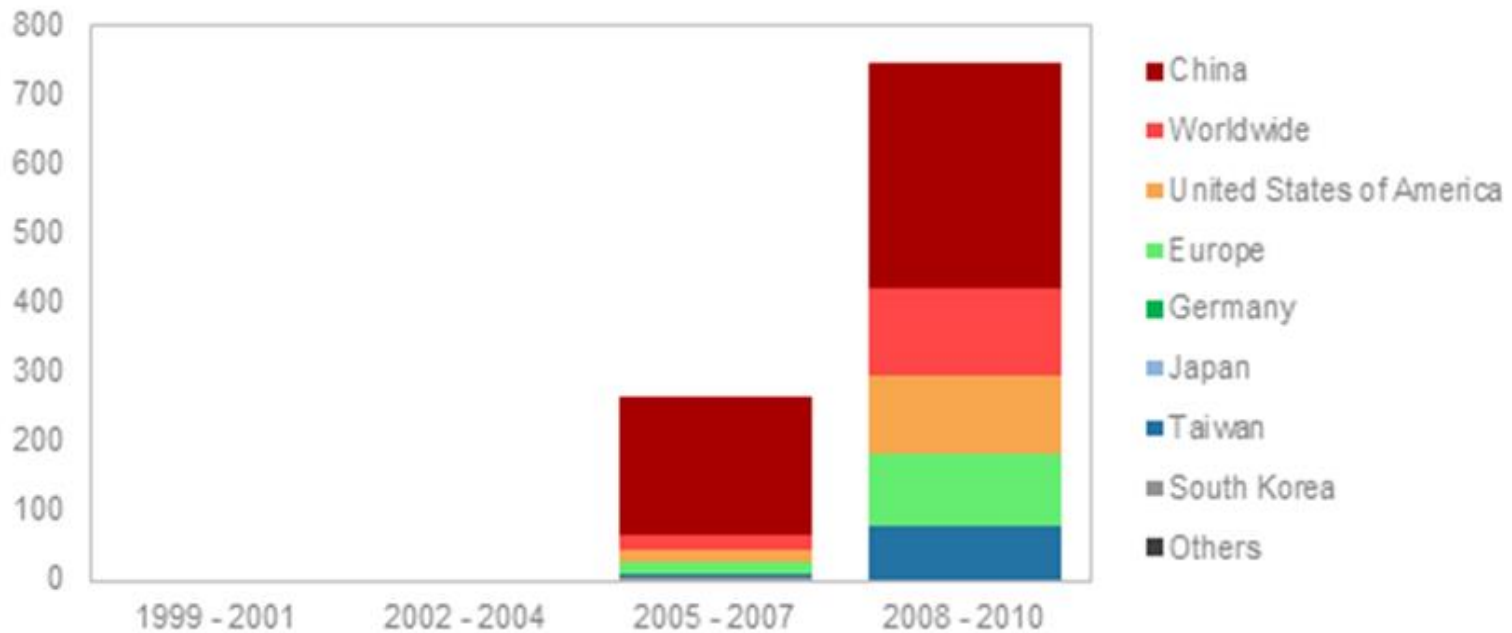


알리바바는 IT, 전기통신, 분석 제어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특허(patent)와 실용신안(utility model)를 출원하고 있음

## 알리바바 특허 출원 현황 (2)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Patent and Utility Model App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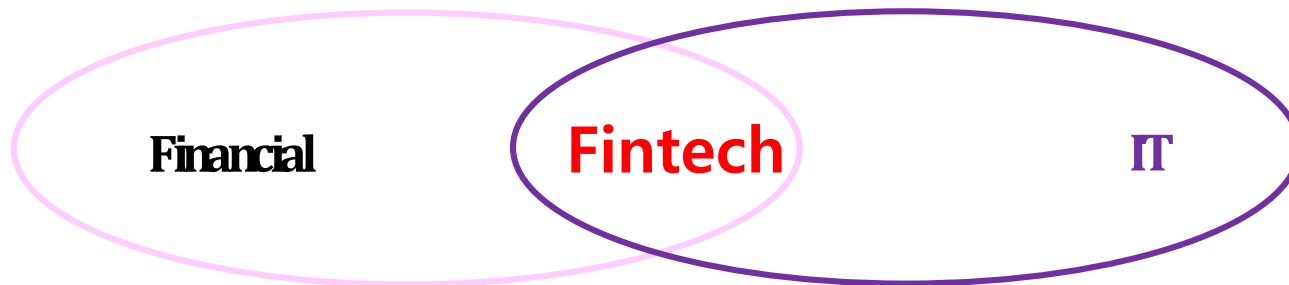
### Alibaba Group



Source: Chinese Champions, [www.chinese-champions.com](http://www.chinese-champions.com), study conducted by the Technische Universität München and the Munich Innovation Group, computed with the EPO Worldwide Patent Statistical Database (PATSTAT) licensed by the OECD-EPO Task Force on Patent Statistics

## ◆ 핀테크 특허 보유의 힘

- 금융과 IT의 융합인 핀테크는 금융 관련 특허 및 IT 관련 특허의 영향을 동시에 받음
- 핀테크 특허는 현재 BM 형태로 출원되고 있으나, 향후 다양한 방식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
- IT 융합이라는 스마트 금융 생태계 변화로 인해 다양한 사업자 간 특허 충돌과 종속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 핀테크 관련 특허 등록의 어려움

## ◆ 국내 전통적 금융기관들의 무관심

- 21년간 시중은행의 특허 출원 현황은 신한은행이 국내 출원 1117건, 해외출원 27건으로 1위.
- 2위인 IBK는 국내 371건, 해외 9건으로 2위

## ◆ 향후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되면 특허괴물들과의 분쟁이 예견됨

- 국내 은행이 과연 위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 해외 핀테크 기업에 의한 금융시장 잠식 우려

# 금융기관 대상 특허전쟁은 '현실'

- ◆ **애플과 알리바바** 등 핀테크 선두기업으로 상징되는 해외 공룡기업은 금융 시장 진출을 위해 이미 **해외에서 ICT 기반 특허를 선점**
- ◆ 미국의 '**특허괴물**'(NPE·특허관리전문회사) **인텔렉추얼벤처스(IV)**는 총 **11건의 특허권에 기반을 두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 JP모건체이스, 캐피털원** 등 미국 내 13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총 15건의 특허소송을 제기



# 한국 핀테크 특허 활성화의 필요성

- ◆ 핀테크 강국인 **미국은 이미 특허 분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 핀테크 기술은 국내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운영도 중요한 기준이 됨**
  - 해외에 송금을 하는 등 해외와의 금융 거래가 중요한 포인트
- ◆ **한국은 핀테크 관련 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국내 핀테크 업체가 해외 진출을 하는 경우 **특허괴물의 먹이가 될 수 있음**
- ◆ 미래 시장 개척, **국내 핀테크 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한국 핀테크 특허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2-3 해외 주요 핀테크 특허 분쟁 사례

뉴스 > 국제 > 일반

인쇄 | + 크게 | - 작게

## 애플, 위스콘신대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2억3400만달러 배상해야

최종수정 2015-10-16 00:00



[이투데이 배수경 기자]애플이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특허 침해로 학교에 2억34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위스콘신 주 매디슨 연방지방법원 배심원은 15일(현지시간) 애플이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학교의 특허관리 기관이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에 2억3400만 달러의 지불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에 내장된 프로세서가 위스콘신대학의 특허를 침해했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애플은 그동안의 특허 소송에서는 주로 제소하는 측으로,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유리하게 전개해 왔지만, 이번 대학을 상대로 한 특허공방에서는 궁지에 몰리는 모습이다.

이번 배상 명령액은 위스콘신 알루미 리서치 파운데이션(WARF)이 청구한 4억 달러를 밑도는 액수다. 그러나 애플 측 변호사는 배상 명령 금액에 대해, 미국 인텔이 2009년에 지급한 1억1000만 달러를 크게 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WARF는 위스콘신대 매디슨캠퍼스의 발명 특허를 민간에 이전하는 기술이전기관(TTO)이다. 2014년 1월 WARF는 애플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WARF는 1998년 위스콘신대학에서 컴퓨터 과학을 연구하는 구린달 소하 교수팀이 발명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에 관한 특허를 아이폰5s / 6 / 6플러스 및 아이패드 등에 탑재된 A7 / A8 / A8X 프로세서가 침해했다며 애플에 4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번주 초 위스콘신 매디슨 연방지방법원은 이 대학의 특허의 유효성과 함께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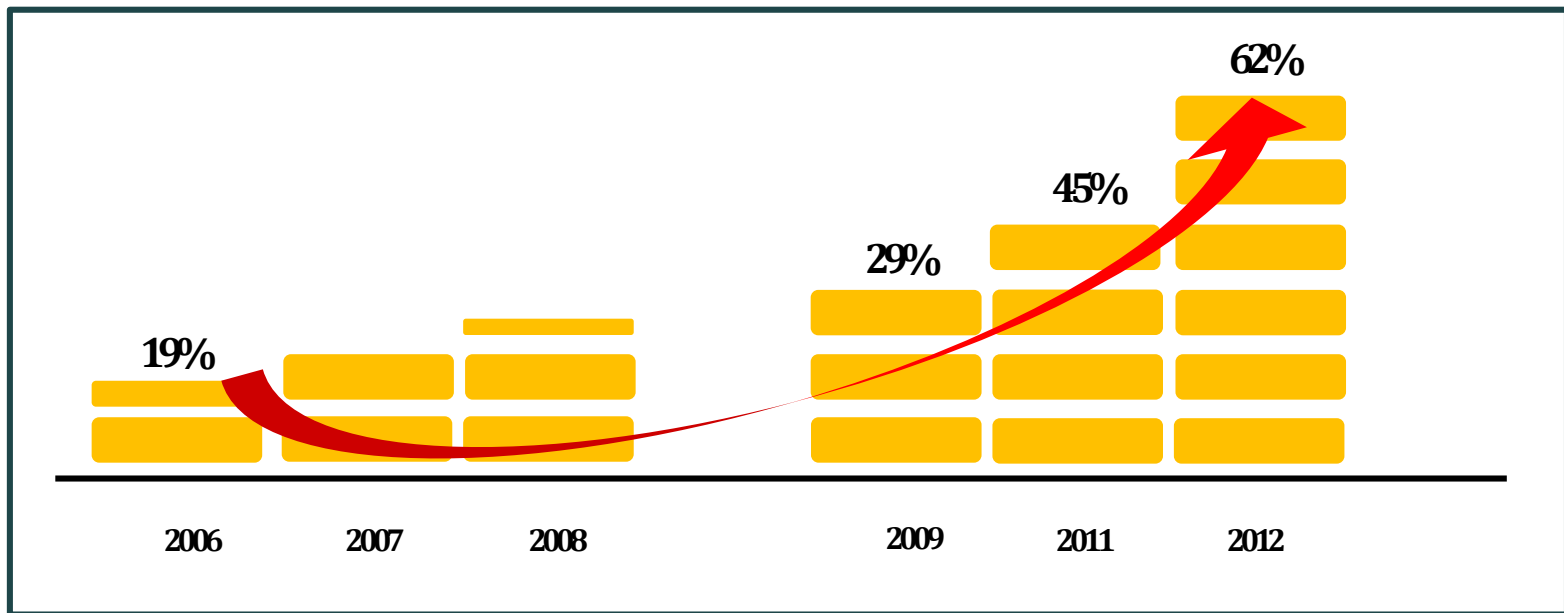
WARF는 올 9월에도 애플을 상대로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에는 최신 기종인 아이폰6s / 6s 플러스 및 아이패드 프로에 탑재된 칩을 특허 침해의 대상으로 했다.

앞서 WARF는 2008년에도 인텔의 코어 2 듀오 등의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유사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제소해 2009년에 승소했다. 당시 배상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언론들은 1억1000만 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출처 : 이투데이 “애플, 위스콘신대 ‘특허침해’ 소송서 패소”>

# 해외 핀테크 특허 분쟁 사례 (1)

- ◆ 미국에서는 핀테크 특허를 흡수한 특허괴물(Patent Troll), 비실시기업(Non-Practicing Entities)에 의한 특허침해 소제기가 급증하고 있음
- ◆ 국내 핀테크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특허침해소송이 증가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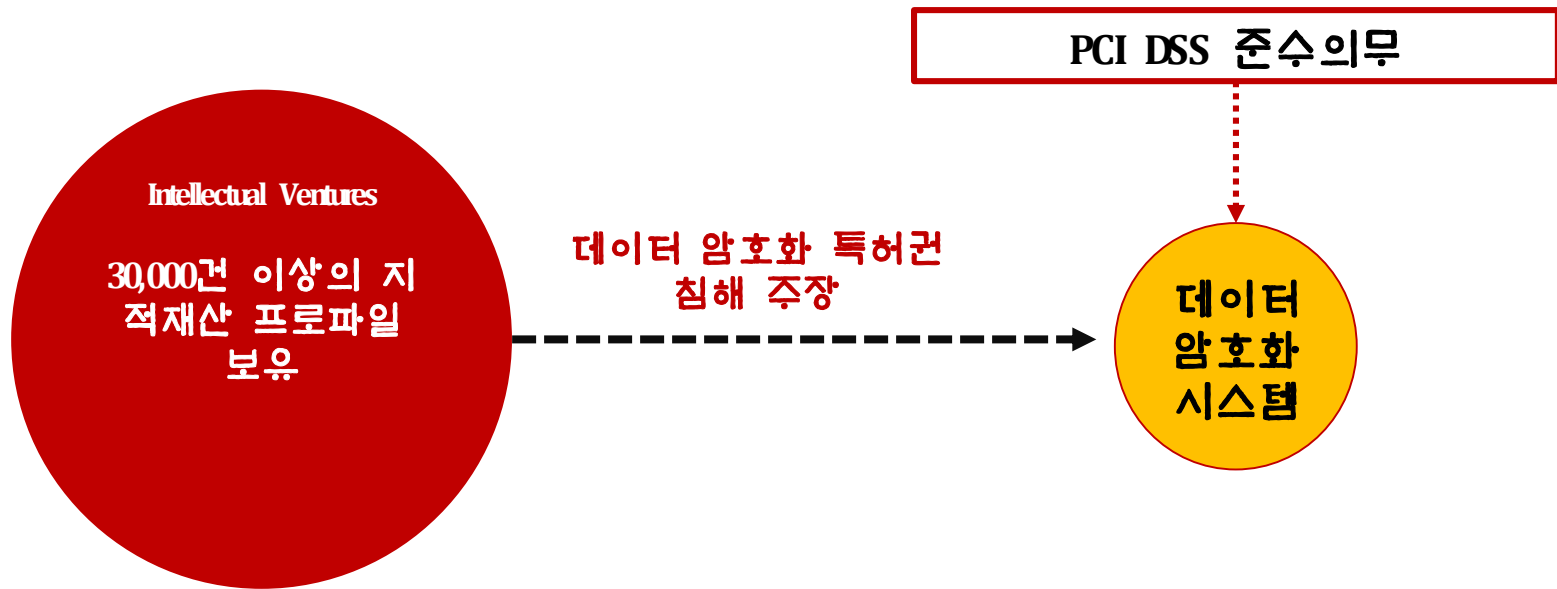


미국 내 특허괴물에 의한 소제기 증가현황 (2012년, 전체 특허소송의 62%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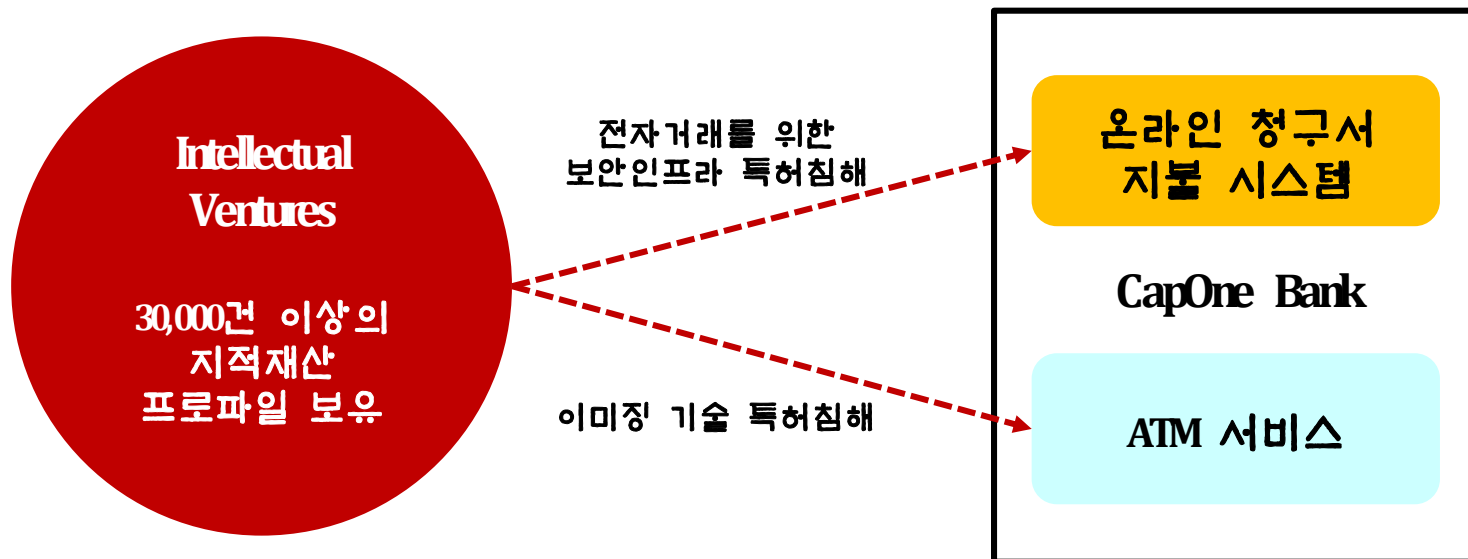
# 해외 핀테크 특허 분쟁 사례 (2)

## ◆ Intellectual Venture v. Commerce Bank

- PCI DSS(Payment Card Industry Data Security Standard) 준수 관련
  - 미국 내 업체는 카드를 통한 지불방식 채택 시 PCI DSS준수 의무 있음
  - PCI DSS는 신용카드 정보를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 Commerce Bank에 PCI DSS를 준수하도록 설계된 시스템 및 서비스/ 웹사이트에 포함된 은행의 데이터 암호화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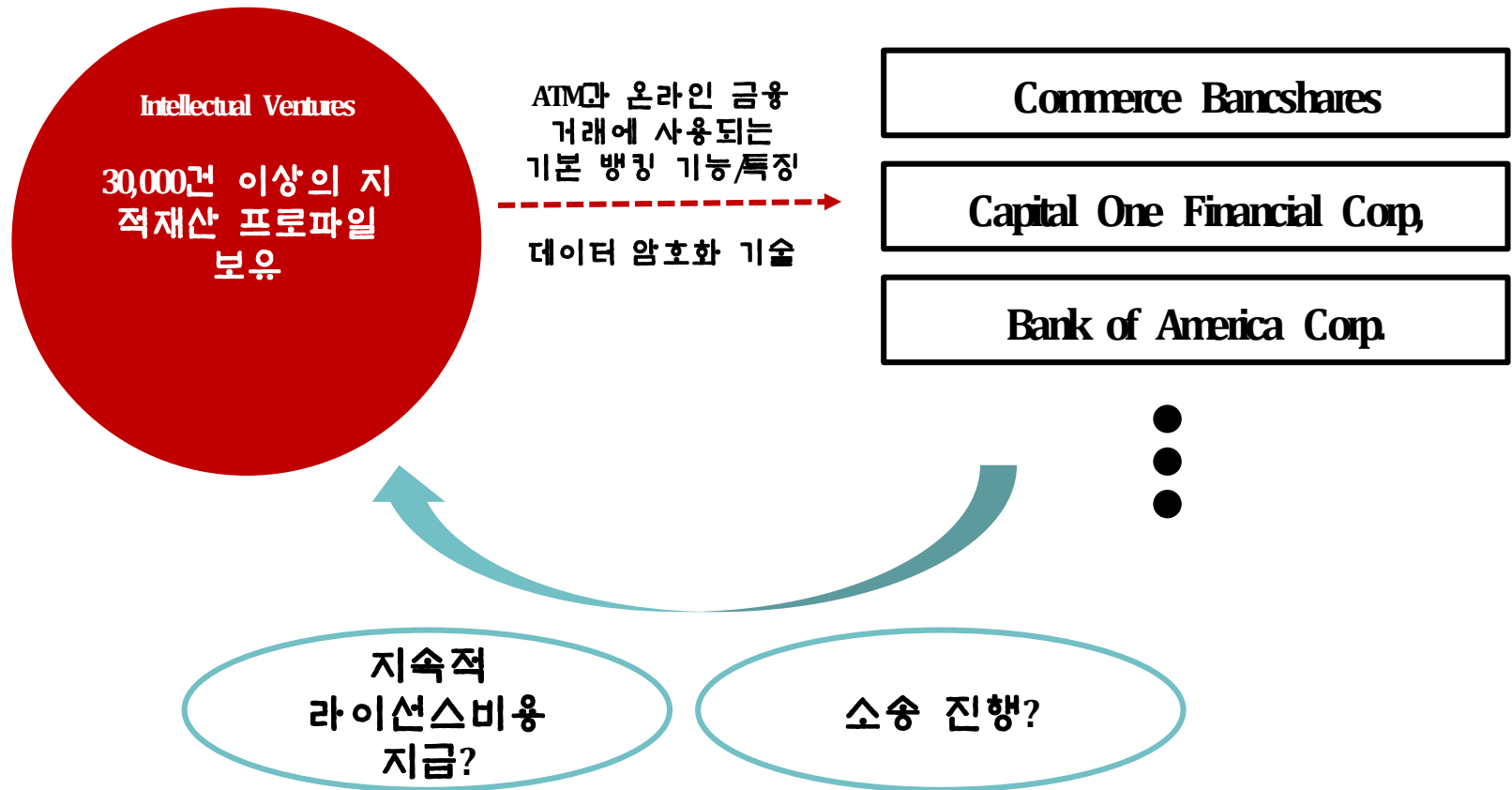


## ◆ Intellectual Venture v. Capital One Bank



# 해외 핀테크 특허 분쟁 사례 (4)

## ◆ Intellectual Venture v. Banks



# 해외 핀테크 특허 분쟁 사례 (5)

## ◆ 특허괴물 v. 금융기관



V.

금융 기관

Commerce Bancshares

Capital One Financial Corp,

Bank of America Corp



특허괴물의 위협 속에서 은행은 계속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가?!



## ◆ SmartFlash v. Apple 사례

-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에 대하여 **디지털저작권관리, 데이터 저장, 결제시스템에 대한 액세스 관리**에 관련된 7개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
- 연방배심원은 그 중 **3개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여 5억 3290만달러를 지급할 것을 결정함**

◆ **핀테크 특허 분쟁**은 금융기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IT 업계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 2-4 핀테크 특허 출원 전략

# 핀테크와 BM 특허

## BM특허



## State Street Bank 미국판례(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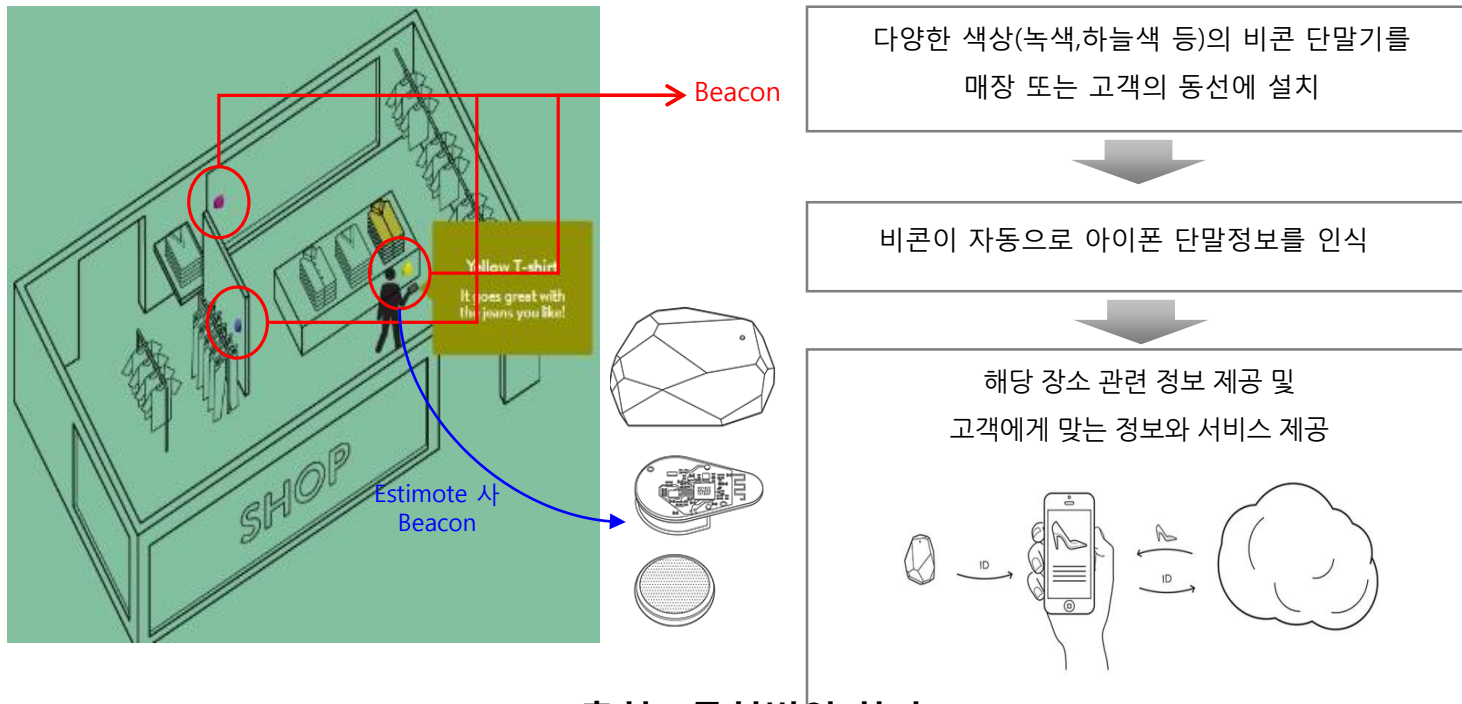
기계로 일련의 수식계산을 실행함으로써 금액 표시에 대응하는 데이터를 최종주가로 변환하는 것은 **유용하고, 구체적인 동시에, 유형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알고리즘 공식 또는 계산이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이 될 수 있다(**분산투자방법 특허성 인정**).

# BM특허 예시

## □ 사물인터넷, 핀테크 시대의 특허전략 기본

- 특허전략은 사물인터넷, 핀테크의 본질에서 출발해야 함
- 사물인터넷의 본질은 "제조"와 "서비스"의 결합
- 핀테크의 본질은 "금융"과 "기술구조"의 결합

BM특허 예시(USP 6,122,520호)



<출처 : 특허법인 하나>

## ◆ 2013년 현재 미국 영업모델 특허(705류) 현황

- IBM : 23,826건 등록
- Bank of America : 531건 등록
- JPMorgan Chase : 324건 등록
- Goldman, Sachs : 158건
- Visa : 118건
- Morgan Stanley : 103건

## ◆ 2013년 우리나라 영업모델 분야 특허 출원 현황

- 내국인 : 6,828건 / 외국인 : 365건 → 총 : 7193건
- 2000년대 초반부터 출원 건수가 급증해 매년 약 500여건이 출원됐으나, 최근 3~4년간 특허경쟁력 확보를 위한 활동이 위축돼 2010년 이후 특허출원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출처 : 특허법인 하나>

# 핀테크 특허 동향 분석의 필요성

## 분석전략 - 동향분석

특허를 중심으로 기술동향과 현황분석, 해당분야 핵심기술 도출.

특허청 산하 지식재산전략원에서 A타입(컨설팅), B타입(동향), C타입(통계)으로 구분 진행-> 사업방향설정에 도움

### C타입 (Economy)

#### Patent Landscape Analysis

기획대상 기술분야와 관련된 특허중심으로 통계분석

### B타입 (Stand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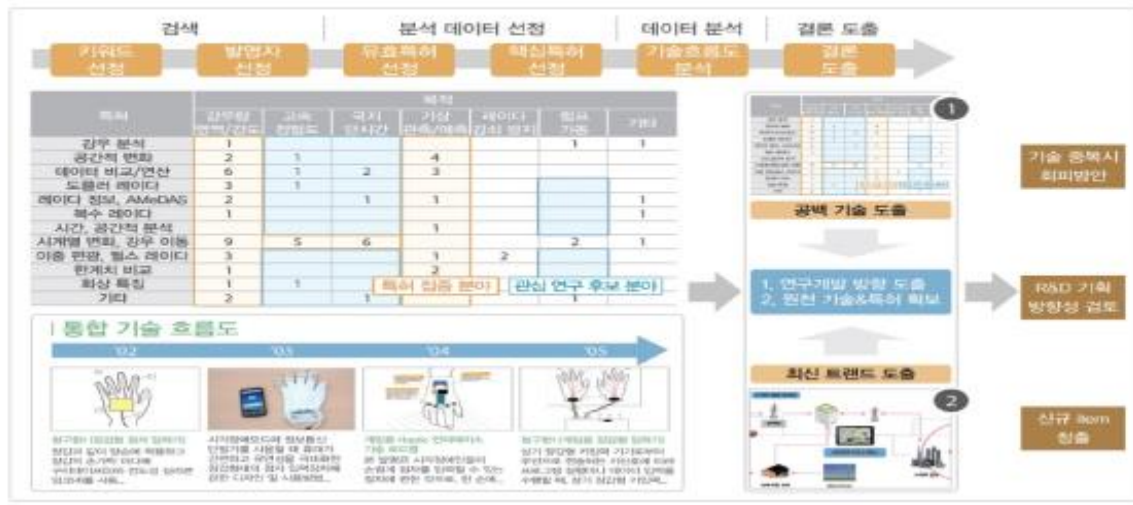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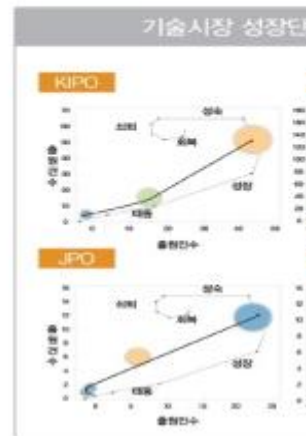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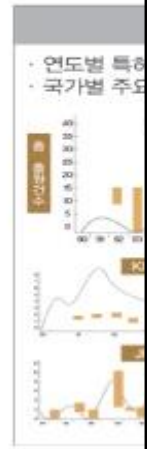
#### Core Technology & Landscape Analysis

특허를 기반으로 한 기술동향과 현황분석 및 해당분야 핵심기술 도출  
(필요에 따라 선택적 논문적용 가능)

### A타입 (Premium)

#### R&D Strategy Analysis & Consulting

특허를 중심으로한 기술동향분석 및 R&D방향성 도출과 종합적인 컨설팅



<출처 : 특허법인 하나>

# 핀테크 특허 출원 전략

## 출원전략-How

주요 기술에 대하여는 본인이 실시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회피 가능한 기술까지 특허출원 요망.

### 특허권자 특허발명

#### 청구항 1.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 단말기, 카드 거래 승인을 수행하는 카드 서버와 연결되어 있는 부가세 환급 처리 시스템에서,

상기 카드 서버로부터 소정 카드에 대한 거래 내역--상기 거래 내역은 카드 번호에 대응하여 거래 물품, 거래 금액, 물품 공급자인 가맹점 정보를 포함함--이 제공되면, 상기 거래 내역에 해당하는 카드 가맹점이 과세 대상의 거래를 판별하는 과세 대상 판별부;

상기 거래 내역에 해당하는 거래 물품이 환급 대상인지를 판별하는 환급 대상 판별부;

상기 과세 대상 판별부의 판별 결과와 환급 대상 판별부의 판별 결과를 적어도 하나 이상을 참조하여 상기 거래 내역이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기 거래 내역에 대한 환급 정보를 생성하는 환급 정보 생성부; 및

상기 사용자 단말기로부터의 환급 정보 요청에 따라 상기 생성된 환급 정보를 상기 단말기로 제공하는 환급 정보 제공부를 포함하는 부가세 환급 처리 시스템.

## CASE

### 웹케시 VS 하나은행 특허분쟁 사례

### 상대방 실시발명

#### 2.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수의 사용자 단말과 카드 서버 및 국세청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부가세 환급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카드 서버로부터 카드 거래 내역(가맹점 정보, 거래 금액 포함)을 제공받아 상기 시스템에 카드 거래 내역을 등록하는 단계(S 1), 상기 국세청 서버에 상기 카드 거래 내역 중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소정의 기준(세법)을 기초로 판별된 가맹점별 과세 대상 여부 정보를 상기 국세청 서버로부터 제공받는 단계(S 2), 상기 카드 거래 내역 중 가맹점 정보에 포함된 가맹점들을 업종별로 분류하는 단계(S 3), 상기 분류된 가맹점별 업종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고, 사용자 단말로부터 업종에 기초한 환급 대상 여부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저장하는 단계(S 4), 상기 사용자 단말의 요청시 상기 카드 거래 내역 또는 환급 대상 여부 정보를 상기 사용자 단말에 제공하는 단계(S 5)를 포함하는 부가세 환급 처리를 수행하는 방법(도 1 및 도 2 참조)

(적)특허권리범위심판

# 웹케시 특허 내용

## 단말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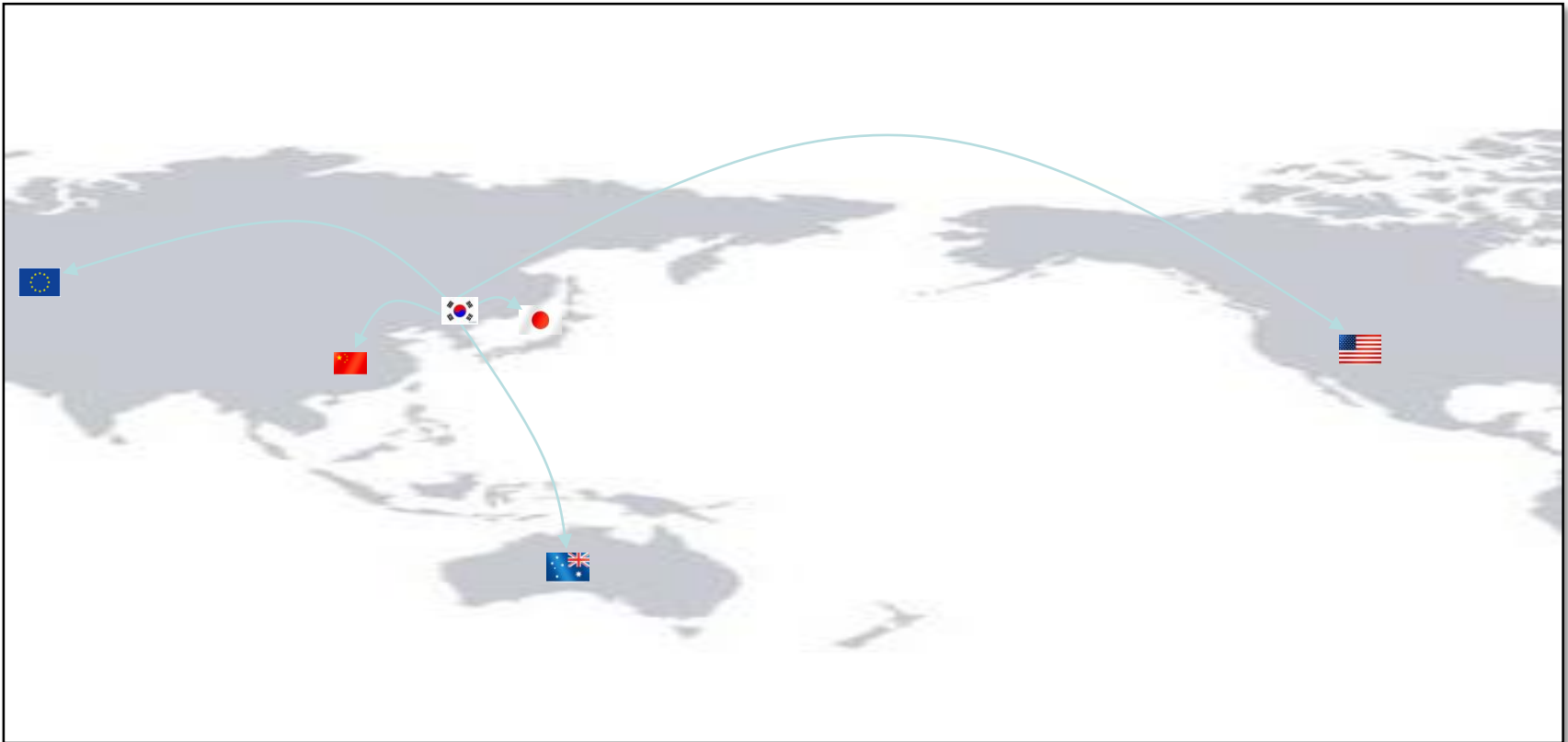


# 핀테크 특허 출원 전략

## 출원전략-Where

속지주의에 의해 각 국가에 해외출원 진행해서 등록 받아야 권리발생.

해외출원 비용은 국내비용 2배 이상이므로 사업영위지역이거나 적어도 가까운 장래에 사업을 영위할 지역에 출원진행.



## ◆ 기술 + 사업 아이디어 = BM(영업모델) 특허

- 단순히 뛰어난 기능을 넘어서 사업유형까지 설계
- 경쟁사가 쉽게 복제하거나 우회하지 못하도록 설계

## ◆ 다양한 핀테크 사업분야에서 특허 확보가 중요

- 지급결제, 플랫폼, 빅데이터 활용 등 다방면 특허 확보
- 특허를 인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
- 대학 및 연구기관의 미활용 특허 라이선스 취득

- ◆ **금융회사의 경우 대부분 기존 오프라인 서비스를 온라인화**
  - 온라인화를 위해 **온라인 기술 특허가 필수**
  - 자체적 특허 출원 보단 **특허 라이선스 취득 또는 인수**
- ◆ **신규 서비스 런칭전에 특허 전략 수립 필요**
  - 사전에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대책이 필요
  - **글로벌 서비스에 대비한 특허 확보가 중요**
  - 특허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제공하기 어려움**

## ◆ 각종 사업 모델에 걸친 종합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준비

- 신규 서비스와 기존 기술의 조화가 필수
- 각종 규제 완화에 대비하여 폭 넓은 특허 포트폴리오 준비
- 기술특허 뿐만 아니라 **BM 특허 확보 필요**
- 핀테크 특허 경쟁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있지만 **해외 서비스 진출 시 각별히 주의**

## ◆ 신기술 개발과 동시에 특허 출원

- 특허의 요건인 신규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비스 오픈 전에 특허 출원가능성 면밀히 검토 필요
-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출원 진행 필요
- 특허 확보가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경쟁 서비스 분야에 유사 특허가 있는지 검색하고, 유사 특허가 존재할 경우, 해당 특허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서비스와 기술 설계 필요

# Q&A

감사합니다